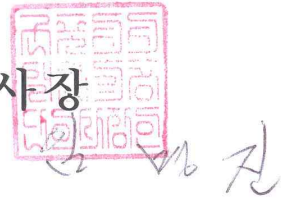


군포시시설관리공단 제67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「군포시시설관리
공단 정관」 일부개정 정관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



2015년 12월 8일

군포시시설관리공단 정관 제 10 호

군포시시설관리공단 정관 일부개정 정관

군포시시설관리공단 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(사업)중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2. 버스공영차고지 관리·운영사업(석유판매업 및 도시가스 충전사업
을 포함한다)

부 칙

이 정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경영기획실
입 안 자	직 위 성 명	경영기획실장 김 하 선
	담당 성명 (전화번호)	류 성 호 (390-7617)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비 고
<p>제31조(사업) (생 락) 1 ~ 11호(생 락) <u>12. 버스공영차고지 관리 · 운영사업</u> 13. (생 락)</p>	<p>제31조(사업) (현행과 같음) 1 ~ 11호(현행과 같음) <u>12. 버스공영차고지 관리 · 운영사업 (석유판매업 및 도시가스 충전사업 을 포함한다)</u> 13. (현행과 같음)</p>	